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운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38

발의연월일: 2020. 10. 7.

발 의 자:정운천・김은혜・권명호

지성호・백종헌・구자근

김형동 · 홍문표 · 송언석

이만희 · 김정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, 국내 말산업의 90% 이상이 경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여겨짐.

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 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,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 등을 해소하고자 함(안 제2조제6호,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, 제51 조, 제53조).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표(票)"를 "표(票)(전자적 형태를 표현한다)"로 한다. 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외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·환급 등의 업무를할 수 있다.
- 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인하여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승마투표권"이란 경마시행	6
시 승마(勝馬)를 적중시켜 환	
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	
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	
투표방법·마번(馬番) 및 금액	
등이 적힌 <u>표(票)</u> 를 말한다.	<u>표(</u> 票)(전자적
	<u> 형태를 표현한다)</u>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・②	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
	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
	매소 외에 「정보통신망 이용
	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
	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
	권 발매·환급 등의 업무를 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
	권 발매 시행으로 인하여 「사

③ (생 략)

제5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단서 신설>

1. ~ 10. (생략)

제5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<단서 신 설>

1. • 2. (생략)

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5
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
려가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른
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
등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
<u>한다.</u>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51조(벌칙)
다만, 제8호 및
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
금형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1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53조(벌칙)
다만, 제1호의
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
과(倂科)할 수 있다.
1 · 2 (현행과 같음)